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그린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법률
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874호, 2024. 1. 2. 공포, 2025. 1. 3. 시행)됨에 따라,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·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)

- 1)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.
- 2) 시행계획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,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,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.

나.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에 관한 요건 및 절차(안 제5조)

- 1) 그린바이오기업의 요건으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
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,
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
것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함.
- 2)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
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하고, 그린바이오기업의 사업자명,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
하도록 함.

다.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(안 제6조)

- 1)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
원, 공공기관 또는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일 것, 5명 이
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추 것 및 업무를 수행하기
위한 사무실·회의실을 확보할 것 등을 정함.
- 2)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
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
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
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정함.

라.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(안 제7조)

- 1)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「산업교육진
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및 「곤
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

기관 등의 기관, 연구소 또는 단체일 것,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갖추 것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을 정함.

2)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11. 15. ~ 11. 29., 11. 25. ~ 11. 29.) 결과,
특기할 사항 없음

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)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② 법 제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2.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
3. 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

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
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
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그 시행
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
2.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

3.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

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
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
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
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
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2년마다 실시
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
2. 그린바이오기업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
3. 그린바이오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
4.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생산 현황
5.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·개발 현황
6. 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

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(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“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
2.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3.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

할 것

②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법 제7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자명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

제6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

가.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
다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

2.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

가. 5명 이상의 근로자(3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한다)로 구성
될 것

나.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
명 이상을 포함할 것

3.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(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
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)을 확보할 것

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
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
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
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
한다.

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
표 1과 같다.

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으
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
게 전담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
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
력 양성기관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
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일 것
가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산업교육기관(그린바이오 분야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설
치·운영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)
나. 「종자산업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
다.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
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
라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라
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
마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
기관
바. 법 제2조라목·바목 및 이 영 제2조와 관련된 그린바이오산업에
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
2.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
것. 이 경우 그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
품부령으로 정한다.
3.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·관리
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
4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린바이오산업 분
야 교육 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
-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

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지정 사실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강의료 및 수당
2. 교재 제작비
3. 실습 장비 및 실습 프로그램 구입비
4. 국내외 연수 과정 및 국제협력 과정 운영비

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⑥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(이하 “육성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·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·확인하여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판단하되,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,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과 지정 해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
2.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접수
3.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·창업 지원
4.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

5.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)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[별표 1]

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6조제4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,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
- 3)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행정처분 사유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8조 제3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)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8조 제3항제2호	지정 취소		

2) 1) 외의 경우	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8조 제3항제3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라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·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	법 제8조 제3항제4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
[별표 2]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7조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,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
- 3)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행정처분 사유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)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2호	지정 취소		

2) 1) 이외의 경우	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3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라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·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4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업무정지 6개월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	70만원
나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	70만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2137